

제4절 차량관리

1.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및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

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하고,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단속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.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차량 운행자의 사건송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.

가. 2008년도 추진실적

1)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

- 시 기 : 상·하반기(연2회)
- 대 상 : 304개소(정비·매매·폐차업)
- 행정처분
 - 현지계도 87건/ 과징금부과 17건(10,750천원)/ 개선명령 8건

2) 무단방치차량 정리

- 일제정리기간 운영 : 연 4회(4, 6, 10, 12월)
- 대 상 : 이면도로, 공한지 등 무단방치차량 취약지역
- 행정처분 : 처리 684건/범칙금부과 47건(35,700천원)/검찰송치 266건

3)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단속

- 대 상 :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구조·장치를 임의 변경한 차량
- 단속실적
 -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: 86건(과태료 6,495천원)

4)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

- 부 과 : 25,576건/ 3,004백만원
- 징 수 : 8,359건/ 293백만원(과년도분 4,627건/ 335백만원)

나. 2009년도 추진계획

1)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

- 자동차관리사업(정비, 매매, 폐차업) 등록업체 : 상·하반기(연2회)
-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 : 연 4회

2) 무단방치차량 정리

- 취약지역(이면도로, 공한지 등) 수시순찰 및 홍보활동 전개
- 방치차량 자진처리 유도 및 통고처분(검찰송치)

3)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단속

- 중점단속기간 운영 : 상, 하반기 (각 2개월)
-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구조·장치를 임의 변경하여 승차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
- 대 상
 -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 멸실차량
 - 철제구조물(범퍼, 스포일러) 설치, 등화착색등 안전기준 위반차량
 - 차체 하부높임, 밴차량 격벽제거등 불법구조변경차량 등

4)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

- 미(지연)가입자에 대한 신속·정확한 과태료 부과
-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조치
- 의무보험가입 및 과태료 자진납부 적극 홍보

2. 차량등록

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통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차 다양화,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, 특히 우리 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서창IC,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차량통행이 많음에 따라 차량등록민원 관련업무 처리 및 상담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차량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에 이르기까지 신속·정확·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.

가. 2008년 민원처리 현황

1) 자동차등록민원 처리현황

(단위 : 건)

합계	신규	이전	변경	말소	저당	압류	원부발급	이륜차
474,268	14,299	8,774	79,631	14,042	14,721	257,658	79,106	6,037

2) 건설기계등록민원 처리현황

(단위 : 건)

합계	신규	이전	변경	말소	저당	압류	봉인 및 중 교부
4,791	230	484	858	560	375	663	1,621

3)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

- 부 과 : 9,463건/ 1,110백만원
- 징 수 : 4,938건/ 307백만원

나. 2009년 추진계획

1)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

자동차등록 민원접수창구를 통합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『차량등록민원 실무편람』 제작을 통해 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- 민원창구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
- 자동차·이륜차등록관련 민원창구 통합운영
- 주 1회 직원 업무연찬 실시

2)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

- 지속적인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
- 각종 신청서 및 민원서류 처리시 체납여부 확인
- 대민홍보를 통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권유